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89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 : 민형배・양정숙・이정문

윤후덕 • 이용빈 • 도종환

주철현 · 김철민 · 정춘숙

김민철 · 정필모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. 보건·의료노동자, 국가기간산업 및 시설관리 노동자,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노동자, 요양 및 돌봄·보육 등 사회서비스노동자, 택배·배달·대형마트 생활물류 배송노동자 등입니다.

이들은 다른 업무와 달리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합니다. 시민의 기본생활과 안전에 이바지하는 빛과 소금같은 존재입니다. 이들의 노동없이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없기에 필수노동자라 불립니다. 많은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이기도 합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.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의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 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·지원하 고자합니다. 이들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은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감염병의 전염,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·지원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필수업종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,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 3조부터 제6조까지).
- 다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(안 제7조).
- 라.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생· 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물품,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,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마. 고용노동부장관은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·시행, 조사·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

장,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감염병의 전염,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 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·지원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- 2. "대면업무"란 의료, 돌봄, 복지, 안전, 물류, 운송 등 국민과 직접 대면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.
- 3. "필수업종" 이란 재난상황 시에도 국민의 생명·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.
- 4. "필수노동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 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 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,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

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
 - 3. 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필수노동자의 처우수준 개선 및 고용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
 - 5. 필수노동자 업종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 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5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고용노동부장관, 관계 중앙

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.
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의 업종별 현황, 근 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) 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

치는 사항
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2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)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위생·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물품 지원사업
 - 2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사업
 - 3.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
 - 4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
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
- 제9조(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의 내용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사용자는 이 를 보호·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관계 기관 등의 협조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계획 및 정책의 수립·시행, 조사·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의 장,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

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